

제 296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장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1972. 10. 16.

시보

차

례

이 영문판은 서울특별시
 외국어교육원 발행한다.
 1972. 3. 1.
 서울특별시 시민과강

◎ 조 례

제 735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

◎ 사 령 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10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35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및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조의 3 (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제 3 조 (당직근무) ② 전항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 (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 3 월 1 일 " 을 " 4 월 1 일 " 로 " 2 월 말 " 을 " 3 월 말 " 로 " 9 시부터 17 시 " 를 " 9 시 30 분부터 17 시 30 분 " 으로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 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 월 이상 6 월 미만인 자는 3 일, 근무기간이 6 월 이상 1 년 미만인 자는 7 일로 한다.

② 2 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 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 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총일수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의 2 (근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결음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연가일수에의산입)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 제1항중 "2월"을 "연누계 2월"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중 "10일"을 "5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 2일 (연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영리업무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것.
-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 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전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 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다만 구청의 4급이하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 5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 22 조 (정치적 행위) ①지방공무원법 제 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것.
- 2. 목적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체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②전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논설,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것.
-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제 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2.10.16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 박일분
하수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 서기 권오용
마포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행정 서기보 고재필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운수사업과 지방행정 주사보 강탁준
행정주사보에 임함.

12 호봉을 급함.
양정 과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 신규수
청소제 2 과 근무를 명함.

서 대 눈 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소형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주택단속과 지방토목기사보 이원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구 획 정 리 제 1 과 지방토목기원보 김영수
복직을 명함.

구획정리제 1 과 근무를 명함.

구 획 정 리 제 1 과 기한부공무원 김병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수도국시설과장 지방토목기과 배희완
직 무 대 리 지 방 토 목 기 정 에 보 함.

시설과장직무대리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특도수원지사무소소장직무대리 지방토목기과 강영철
지방토목기정에 보함.

특도수원지소장에 명함.
3 호봉을 급함.

중 부 병 원 지방간호기사 이정숙
지방간호기과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간호과장에 보함.

남 부 병 원 지방간호기사 김정균
지방간호기과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남부병원간호과장에 보함.

◎ 1972.10.18.

경남무안군 지방행정 주사 박경화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 주사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동대눈구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

시 장